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52-1996-270227



[집합건물]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제4층 제4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6년10월22일	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	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및 노유자시설 1층 164.78㎡ 2층 164.78㎡ 3층 164.78㎡ 4층 164.78㎡	도면편철장 제2책1525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3일 전산이기
2		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[도로명주소]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325번안길 21	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및 노유자시설 1층 164.78㎡ 2층 164.78㎡ 3층 164.78㎡ 4층 164.78㎡	도로명주소 2018년12월7일 등기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	대	770㎡	1996년10월22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3일 전산이기

[집합건물]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제4층 제402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6년10월22일	제4층 제402호	철근콘크리트조 46.80㎡	도면편철장 제2책1525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3일 전산이기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770분의 34.88	1996년8월23일 대지권 1996년10월22일	
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3일 전산이기	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97년2월26일 제16574호	1997년1월20일 매매	소유자 한병춘 571002-*****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-402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3일 전산이기
2	소유권이전	2001년8월7일 제66499호	2001년7월9일 매매	소유자 허상곤 660307-*****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동 402호
3	소유권이전	2007년5월15일 제55540호	2007년4월2일 매매	소유자 강순교 420310-***** 구리시 수택동 509-30 동진연립 102호 거래가액 금110,000,000원
3-1	3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09년9월23일 제97818호	2007년5월15일 전거	강순교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-402

[집합건물]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제4층 제402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4	소유권이전	2013년6월24일 제76334호	2013년6월3일 매매	소유자 강순옥 601005-*****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3번길 12(수택동) 거래가액 금130,000,000원
5	압류	2016년5월30일 제52922호	2016년5월23일 압류(장수과-10069)	관리자 남양주시
6	5번압류등기말소	2016년11월23일 제121760호	2016년11월23일 압류해제	
7	소유권이전	2020년10월6일 제129486호	2020년10월6일 매매	소유자 박화숙 520607-*****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53-4 거래가액 금135,000,000원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4월22일 제1847497호	2025년4월18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71558)	채권자 신현천 470304-*****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7길 13-4, 103동 502호(장안동, 공감대아파트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근저당권설정	1997년2월26일 제16575호	1997년2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9,100,000원정 채무자 한병춘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-402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111235-00019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-3 (남양주지점)
2 (전 4)	근저당권설정	1997년2월27일 제17177호	1997년2월2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7,600,000원정 채무자 한병춘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-40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0015655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남양주지점)

[집합건물]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제4층 제402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2000년 10월 23일 전산이기
3	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01년8월7일 제66497호	2001년8월7일 해지	
4	2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01년8월7일 제66498호	2001년8월7일 해지	
5	근저당권설정	2001년8월7일 제66500호	2001년8월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36,000,000원 채무자 허상곤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동 402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0015655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남양주지점)
5-1	5번근저당권이전	2005년8월5일 제83218호	2001년11월1일 회사합병	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서울대출실행센터)
6	5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05년8월5일 제83219호	2005년8월5일 해지	
7	근저당권설정	2009년9월23일 제97819호	2009년9월23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36,000,000원 채무자 강순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104-40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-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(남양주지점)
8	7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3년6월24일 제75932호	2013년6월24일 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[집합건물]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제4층 제402호

관할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

열람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6년02월12일 16시36분17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52-1996-270227

[집합건물]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78-47 강남빌리지 제104동 제4층 제4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박화숙 (소유자)	520607-*****	단독소유	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53-4	7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4월22일 제1847497호	채권자 신현천	박화숙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